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지원대상 모집공고

폐업 선택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패비용 최소화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대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매출 하락, 사업성 악화로 폐업을 할지 말지 고민중이신가요?
폐업 예정이나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사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폐업을 고민하고 계신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진단을 통해 솔루션(컨설팅 + 비용지원)을 제공해드립니다.

1.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 사업공고일 ~ 2024. 11. 15.
- 2) 지원대상 :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위기 소상공인 (**※ 기폐업자 지원불가**)

※ 경영진단(유지/한계기업) 완료시까지 실질적 사업유지해야 함

3) 지원규모 : 하반기 1,029개 내외

4) 지원내용

- ① 현장방문 예비진단
- ② 경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 ③ 솔루션 이행 비용 (최대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지원

5) 지원절차



* 유지기업 : 경영진단 결과, 수익성과 아이템, 상권, 시장성,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유지** 및 개선하기로 협의한 기업

* 한계기업 : 경영진단 결과, 수익성과 아이템, 상권, 시장성,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정리**하기로 협의한 기업

6) 컨설팅 및 비용지원 세부내용

- (컨설팅) 유지/한계기업을 진단하고 **아래 분야 중 선택 지원**

분 야	세부 지원내용
사업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 신고절차, 직원 및 재고관리, 사업장 양수도, 폐업 세무, 노무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연계
경영개선	▶ 경영지도(마케팅, 매장운영 등) 및 전문지도(SNS, 매장연출, 세무, 노무 등)

- (비용지원) ※ **경영개선(유지기업) 비용 신청기업은 컨설팅 4회이상 이수 필수**

▷ **본 사업 신청업체가 공사(공급)업체 선정 및 비용 지급 후 재단이 신청업체에 정산**

▷ **최대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으로 선택항목 실비 지원**

분 야	항 목	지원 내용
사업정리 (한계기업) (※폐업완료 확인후 지원)	점포원상복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등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불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용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환수 협약) (※ 중복수령 확인시 해당 사업 지원금액 환수 조치)
	사업장양도수수료	•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비 등 수수료
	영업양도 광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양도를 위하여 소요되는 광고비용 ▶ 광고매체에 광고게재여부 확인 후 지원
	기술훈련(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훈련비용 ▶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이수 확인 후 지원
	임 차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최대 5개월분 지원 ▶ 임차료는 2023년 ~ 신청일 현재 기납부한 내역에 한함

분 야	항 목	지원 내용
경영개선 (유지기업) (최대 3개품목)	교육 훈련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기술 강화 교육비(경영관리, 온라인 활용) • 경영개선 역량 강화(마케팅, 신제품 개발, 업종전환)
	광고 홍보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홍보를 위한 상점/제품 브로셔, 사인물 제작 •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사진/영상 콘텐츠 인플루언서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배너광고, 블로그 마케팅 • 쿠폰 프로모션, 배달용 밀키트, 배달용기 디자인 제작 등 배달플랫폼 입점 및 활성화 제반 비용
	환경 개선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 인테리어, 고객용 화장실 공사 등 점포환경 개선 • 고객 응대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위생환경 및 방역 품목 • 신제품(메뉴) 활성화를 위한 메뉴판, 사인물 제작 • 사업장에 부착되어 재판매 불가능한 진열장, 의자/테이블 • 비대면 트렌드 대응을 위한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스마트 오더 구매 비용 (렌탈 비용 지원 불가)
	고효율 기기 (세부요건 충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용도로 사용 중인 노후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교체가격의 최대 40% (신규 구매 지원 불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경영관리 프로그램 구입비용 • 신제품 개발 솔루션 이행을 위한 비용 • 특허,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용

※ 컨설팅 및 비용지원 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정책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가. 지원항목은 반드시 경영진단 결과와 연계성이 있어야 함

(예: ① 한계기업 진단 >> 점포원상복구비 등 사업정리 분야 비용지원 항목

② 유지기업 진단 >> 솔루션 이행 등 경영개선 분야 비용지원 항목)

나.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수에 관계없이 업체당 3백만원 실비 지원

다. 폐업사실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 제출로 확인

라. 경영진단(유지/한계 진단) 완료 시까지 실질적 사업을 유지해야 함

마. 고효율 기기 세부 지원요건(모두 충족)

① 사업 용도로 사용 중인 노후 에너지 기기 교체가격의 최대 40% (공급가 기준)

▶ 에너지 효율 1등급인 업소용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의 교체 구매에 한정

[구매 전] 사용 중인 노후 기기 촬영, 구매 예정 품목의 에너지 효율 등급 확인

[구매 후] 현장 방문 시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사진 촬영

② 한국전력공사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식품매장 냉장고 문닫기 지원사업 등 중복지원 환수 협약 (별첨)

2. 지원대상

1)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아래 ①, ②번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공고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유상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불가)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타 대표자 동의 필수)

※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법인 포함, 대표자 기준)

* 소상공인 확인 요건 : 상시근로자 및 평균매출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연 번	구 분
상시근로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별첨 2)에 해당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제1항~제4항 참고

2)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대지원

※ 지원사유

- ‘개 식용 종식 특별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관련 업종의 폐업 또는 전업 지원

※ 지원대상 :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소유 여부 무관)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② 공고마감일 현재 개식용 업종 운영중*인 사업자

* 개식용 관련 매출 등 증빙 불가 시, 지원 제외가능

* 자가 사업장 운영 중인 경우, 임차료 지원 불가

3) 지원제외

- 기폐업자 (경영진단 컨설팅 완료 시까지 실질적 사업을 유지해야 함)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별첨 1]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 단,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대지원 대상은 가능(임차료 지원 불가)
 - ▶ 단,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2024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 받거나 진행 중인 자
 - ※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사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솔루션 지원 비용
- 사업체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방법

- 1) 신청접수 기간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2부제' 운영)
 - 2024. 6. 25(화) 10:00 ~ 2024. 7. 8(월) 17:00 (전산 신청기준)
- 2) 신청방법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접수
 - ▶ 사업안내 →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 3) 제출서류
 - 아래 필수 및 추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대지원의 경우) 서류 제출

연 번	제 출 서 류	구 분	비 고
1	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필 수	신청페이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스캔 첨부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번호 뒷번호 가림 필수)		
4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 *		
5	[개식용 종식 특별법 대상] 간판, 메뉴판 사진 각 1매(총 2장)	추 가	

* 업력 3년미만인 경우, 확인되는 매출 전체기간에 대한 자료 첨부

4. 선발방법

1) 선발절차

요 건 심 사 (1차 심사)	▶ 모집기간 신청자 전원에게 지원대상 적격여부 판별 - 폐업 여부(기폐업 시 제외), 업력, 사업장 소재지, 재보증제한업종 여부 등 ▶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대지원 대상 우선선발
↓	
우 선 선 발 (2차 심사)	▶ 다음의 기준 적용하여 대상 선발 - 사업 최초신청자, 업력 (개업연월일~사업공고일) 5년 이상

- ✓ 1차 심사 선발 인원이 지원규모 초과 시, 2차 심사 실시. 2차 심사 동순위간 우선 순위는 다음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 ① 23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받지 않은 자 ② 업력 (개업연월일~사업공고일)이 오래된 순 ③ 신용평가 점수(최근 1개월 이내 NICE평가정보 점수 기준)가 낮은 순

※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사업,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솔루션 지원 비용

2) 선발통지 : 개별통보 (※접수 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

5. 향후 일정

- 1) 선발결과 통지 : 2024년 7월 말
- 2) 사업수행시작일 : 2024년 8월
- 3) 경영진단 및 컨설팅 : 2024년 8월 ~ 9월
- 4) 비용지원 : 2024년 9월 ~ 10월

※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및 개별통지 예정

6. 기타 사항

- 1) 제출서류 누락, 사업공고상 지원요건이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절차 진행 중이라도 지원대상 제외처리 될 수 있습니다.
- 2)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문자(SMS)로 통지해 드립니다.
- 3) 지원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4) 아래 절차에서 추가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 무	요청 서류	비 고
선발 및 컨설팅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경영진단 및 기업규모 확인
	• 세부매입 및 매출(수입금액) 자료 등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우대지원 대상 확인

5) 문의 : ☎ 1577-6119 (서울신용보증재단)

☎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별 첨 : 1. 재보증제한업종 1부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부.

3. [한계기업] 사업정리 비용지급 요청서 등 (서식 1~서식 3) 1부.

4. [한계기업] 사업정리 비용 요청 시 필요 서류 1부.

5. [유지기업] 경영개선 이행비용 지급 요청서 등(서식 1~서식2) 1부.

6. [유지기업] 경영개선 비용 요청 시 필요 서류 1부.

7. 고효율 에너지 기기 지원 신청인 협약서 1부.

8. 점포원상복구(철거)비용 지원 신청인 협약서 1부.

9. 모집공고 및 사업관련 주요 질의응답 1부.

재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 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건전 문화 관련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투기 조장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17.10.17 개정)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 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사업정리 비용지급 요청서

서울신용보증재단 귀중

1. 신청인

접수번호		업체명	
대표자		업종/주상품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2. 요청내용

분류명	점포원상복구, 사업장양도수수료, 영업양도 광고비, 기술훈련(교육)비, 임대료 등
품목명	원상복구 공사 내용, 영업양도 광고내용, 기술훈련(교육) 수강내역 등
공급일자	원상복구 공사 완료 일자 또는 광고게재 일자, 기술훈련(교육) 수강완료 일자 등
요청금액	
공급업체명	원상복구업체 (영업양도 광고비는 신청업체)기재 등
은행명	(신청업체) 계좌 은행명 기재
계좌번호	(신청업체) 계좌번호 기재
예금주	(신청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기재
기타	특이사항 있는 경우

3. 첨부서류 목록

폐업사실증명원	✓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공급자)	✓
통장사본(공급자)	✓	통장사본(신청자)		송금내역사본	
영업양도 광고게재 확인서		매매(임차) 계약서 사본		수료확인서 사본	
임대료 지급 내역		기타			

상기와 같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점포명 :

대표자 :

(인)

시설 완료 확인서

(점포원상복구비 신청시)

접수번호		업체명/대표자	/
점검일자	20 . .	확 인 자	(인)
아래의 첨부 사진과 같이 원상복구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점포 전면(간판 보이도록)/공사前	점포 전면/공사後
사진 첨부	사진 첨부

실내 전경/공사前	실내 전경/공사後
사진 첨부	사진 첨부

영업양도 광고 게재 확인서 (영업양도 광고비 신청서)

접수번호		업체명/대표자	/
점검일자	20 . .	확 인 자	(인)
아래의 첨부 사진과 같이 영업 양도광고 게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영업양도 광고게재 사이트(http://www.)
사진(캡처이미지) 첨부

영업양도 광고게재 사이트(http://www.)
사진(캡처이미지) 첨부

사업정리 비용 요청 시 필요 서류

지 원 항 목	필 요 서 류	비 고
<p>1. 점포철거 (원상) 복구비</p>	<p style="text-align: center;">-공통 서류-</p> <p>① 사업정리 비용지급 요청서 1부 [별첨 3](서식1) ② 시설 완료 확인서 1부 [별첨 4](서식2) ③ 견적서 1부(최근 1개월이내 발행분) ④ 폐업사실증명원 1부 ⑤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비용 지급시 필요한 서류-</p> <p>▶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한 경우 - 신용카드 결제 전표 ※ 신용카드 결제 시 '일시불' 결제만 가능</p> <p>▶ 신청업체가 공급업체에 계좌이체로 지급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이 금액을(영수)함'으로 발행) 1부 또는 현금영수증 1부 - 공급업체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서(통장거래내역 또는 이체확인증 등) - 신청업체 통장표제부 ※ '본인 명의 계좌'만 지원 가능, 타인 명의계좌 사용 시 지원 불가</p>	<p style="text-align: center;">• 업체당 최대 3백만원 이내 지원 (VAT는 신청업체 부담)</p>
<p>2. 영업양도 수수료</p>	<p style="text-align: center;">-공통 서류-</p> <p>① 사업정리 비용지급 요청서 1부 [별첨 3](서식1) ② 점포 매매 계약서 사본 ③ 폐업사실증명원 1부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비용 지급시 필요한 서류-</p> <p>▶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한 경우 - 신용카드 결제 전표 ※ 신용카드 결제 시 '일시불' 결제만 가능</p> <p>▶ 신청업체가 공급업체에 계좌이체로 지급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이 금액을(영수)함'으로 발행) 1부 또는 현금영수증 1부 - 공급업체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서(통장거래내역 또는 이체확인증 등) - 신청업체 통장표제부 ※ '본인 명의 계좌'만 지원 가능, 타인 명의계좌 사용 시 지원 불가</p>	

지 원 항 목	필 요 서 류	비 고
<p>3.영업양도 광고비</p>	<p style="text-align: center;">-공통 서류-</p> <p>① 사업정리 비용지급 요청서 1부 [별첨 3](서식1) ② 영업양도 광고 게재 확인서 1부 [별첨 5](서식3) ③ 폐업사실증명원 1부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비용 지급시 필요한 서류-</p> <p>▶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한 경우 - 신용카드 결제 전표 ※ 신용카드 결제 시 '일시불' 결제만 가능</p> <p>▶ 신청업체가 공급업체에 계좌이체로 지급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이 금액을(영수)함'으로 발행) 1부 또는 현금영수증 1부 - 공급업체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서(통장거래내역 또는 이체확인증 등) - 신청업체 통장표제부 ※ '본인 명의 계좌'만 지원 가능, 타인 명의계좌 사용 시 지원 불가</p>	<p style="text-align: center;">• 업체당 최대 3백만원 이내 지원 (VAT는 신청업체 부담)</p>
<p>4.기술훈련 (교육)비용</p>	<p style="text-align: center;">-공통 서류-</p> <p>① 사업정리 비용지급 요청서 [별첨 3](서식1) ② 수료증 사본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까지 이수 확인 서류) ③ 폐업사실증명원 1부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p> <p style="text-align: center;">-비용 지급시 필요한 서류-</p> <p>▶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한 경우 - 신용카드 결제 전표 ※ 신용카드 결제 시 '일시불' 결제만 가능</p> <p>▶ 신청업체가 공급업체에 계좌이체로 지급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이 금액을(영수)함'으로 발행) 1부 또는 현금영수증 1부 - 공급업체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서(통장거래내역 또는 이체확인증 등) - 신청업체 통장표제부 ※ '본인 명의 계좌'만 지원 가능, 타인 명의계좌 사용 시 지원 불가</p>	

지 원 항 목	필 요 서 류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5.임차료 지원</p>	<p style="text-align: center;">-비용 지급시 필요한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정리 비용지급 요청서 1부 [별첨 3](서식1) - 폐업사실증명원 1부 - 신청업체 통장표제부 - 최근 5개월 임차료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또는 이체확인증 등) <p style="color: red;">※ '본인 명의 계좌'만 지원 가능, 타인 명의계좌 사용 시 지원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최대 3백만원 이내 지원 (VAT는 신청업체 부담)

(사업명) 완료 확인서

접수번호		업체명/대표자	/
점검일자	20 . .	확 인 자	(인)
아래의 첨부 사진과 같이 솔루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완료 전	
사진 첨부	사진 첨부

완료 후	
사진 첨부	사진 첨부

(사업명) 비용 요청 시 필요 서류

지급항목	업종
솔루션 이행비용	<p>- 공통 서류 -</p> <p>① (사업명) 비용지급 요청서 1부 [별첨 5](서식1) ② (사업명) 완료 확인서 [별첨 5](서식2) ③ 품목명, 금액이 표시된 견적서 1부 - 온라인 구매시 상세 페이지로 대체 가능</p> <p>- 첨부 서류 -</p> <p>□ 재단에서 신청업체(고객)로 비용 정산하는 경우</p> <p>○ 신용카드 결제 전표 - 전표상 품목명 표시 기본이며, 불가피한 경우 견적서 품목 확인 ※ '일시불' 결제만 지원 가능, 할부 결제 지원 불가</p> <p style="text-align: center;">혹은</p> <p>○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구매시 생략 가능) ○ (품목명 표시된)전자세금계산서(영수) 1부 또는 현금영수증 1부 ○ 공급업체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서(통장거래내역 또는 이체확인증) ○ 신청업체 본인 명의 통장표제부 ※ '본인 명의 계좌'만 지원 가능, 타인 명의계좌 사용 시 지원 불가</p>

점포원상복구(철거)비용 지원 신청인 약속서

본인은 20 년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신청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 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 지원의 수혜자가 아님을 약속합니다.

위반사항 발견 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지원금 환수 및 이에 수반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본 약속서는 출력 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I. 지원신청 관련 사항

1. 온라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의 메인페이지 하단
-> 지점 안내를 통해 가까운 영업점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여 온라인 접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신청 내용과 첨부서류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 다음과 같이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접속 후 로그인
 - 본인 이름부분(우측 상단에 “000 님”)에 커서를 옮긴 후 [마이페이지] 클릭
 - [신청내역] 탭 클릭 후 본인 지원이력 확인

※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의 “홈페이지 사용 안내” 참조하시고, 수정 후 해당내용이 반영 되었는지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모집중인 중장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등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되나요?

- 2024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비용지원 사업 :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사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솔루션 지원 비용 등

4. 본점과 지점을 모두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본점 사업자 기준(사업자 번호, 사업장 소재지)으로 지원 되며, 본점과 지점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어야 합니다.

5. 휴업중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상 “휴업자”로 조회된다면 지원 불가합니다.

6. 공동사업자는 1명만 지원 가능한가요?

- 네, 2명 이상의 공동 사업자의 경우 대표 1명만 지원 가능하며, 다른 사업자의 동의를 위해, 별도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7. 여러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1건만 지원 되나요?

- 네,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신청인 기준 1개의 사업자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동일하면 신청인 기준 1개의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8.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만 사업신청 가능한가요?

- 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9.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사업자로도 사업자등록증과 본인인증 수단(휴대폰 등)을 가지고, 사업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10. 개명하여 본인인증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개명하신 이름으로 본인인증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핸드폰 본인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이용하고 계시는 통신사에 문의하시어 개명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의 : 본인인증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1. 소상공인 조건 (상시근로자 및 평균매출액)은 어떤 서류로 확인 가능하며 어디서 발급하나요?

- 상시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상 등재된 종업원 수 기준으로 하며 해당서류는 필요시 추가 요청하는 서류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균매출액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의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 규모로 산정하며 해당 서류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류발급 방법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12.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분실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네, 지원이 불가 합니다.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 또는 거래하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 지원사업 관련

13. 2024년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매출 하락, 수익성 감소 등이 지속되어 폐업을 고민하는 점포형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진단 결과 (한계기업 또는 유지기업)에 따라 관련 분야 컨설팅(사업정리 또는 경영개선) 및 최대 3백만원 이내(VAT 자부담) 솔루션 이행 비용을 지급합니다.

Ⅲ. 지원대상 관련

14. 기폐업자는 지원제외 되나요?

- 네, 해당 사업은 폐업을 고민중이나 사업을 정상 운영하고 계신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입니다. 사전에 경영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이에 따른 솔루션을 이행하고 지원하는데 취지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 이미 폐업하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 진단이 불가하여 제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 기존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을 받았던 이력이 있어도 지원가능한가요?

- 네, 2022년 이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셔도 신규 창업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다면 금번 지원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2023년에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다시서기 프로젝트,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솔루션 비용지원 등)을 받으신 이력이 있는 경우, 다른 지원자분들보다 선발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16.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 네,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단, 사업장의 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포함) 및 실제 지급내역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 예외적으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대지원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가 사업장소유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임차료 지원은 불가)

17.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대지원은 무엇인가요?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우선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경우, 개 식용 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간판과 메뉴판 사진 각 1매가 사업 신청 시 추가로 필요합니다.

IV. 경영진단 및 컨설팅 관련

18. 경영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내용] ① 경영진단 전 재단 소속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현황 및 애로사항을 예비진단하고 대표님 상황에 맞는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해드립니다.
② 수익-비용 등을 파악하여 전문 컨설턴트가 현 기업 상태를 진단합니다.
[방법]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대표님과의 면담을 통해 진단합니다. 방문 일정은 전문 컨설턴트가 대표님께 개별연락하여 방문 가능한 일자를 정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매출자료 등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횟수] 예비진단 및 경영진단 각 1회 진행되며 진단 후 “경영진단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9. 맞춤형 컨설팅은 어떤 내용인가요?

- 경영진단 결과(한계기업 또는 유지기업)에 따라 컨설팅 분야가 정해집니다.
 - 한계기업 ⇒ 사업정리 컨설팅
 - 유지기업 ⇒ 경영개선 컨설팅
- 사업정리의 경우, 폐업 신고절차, 폐업시 처리해야 할 노무 및 세무, 시설 집기 견적산출 등이 있으며, 경영개선 분야는 홍보·마케팅, 손익관리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V. 비용지급 관련

20. 솔루션 이행비용이 무엇인가요?

-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정리 또는 경영개선을 위한 솔루션이 제시됩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이행 (경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실비 지원입니다.

21. 비용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 경영개선(유지기업) 비용 지원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경영개선 컨설팅을 4회 이상 이수하셔야 하며, 사업정리(한계기업) 비용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사업정리 컨설팅 2회를 이수하신 후, 비용지급 가능항목 확인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금액은 최대 3백만원 이내 지원항목에 대한 실비(부가세 신청업체 부담)를 지원 합니다.
- 사업정리 비용의 경우 폐업 사실확인 및 항목별 이행완료를 확인(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의 경우 현장 확인 등)하며, 대표님께서 공사(공급)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신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재단에서 대표님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해드립니다.

22. 사업정리 비용 지급 시 꼭 폐업해야 하나요?

- 네. 사업정리 비용의 경우, ‘사업정리 컨설팅’에 대한 솔루션 이행비용이기 때문에 국세청 휴폐업조회상 ‘폐업’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지원가능합니다.

23.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자 대표 은행계좌로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타인계좌로 받을 수 없나요?

- 대표자 본인의 계좌인증을 통한 직접신청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요청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가능한 가족에 한하여, 증빙자료와 동의서류 작성 후 지급 가능합니다.